
2022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사업

2022. 1.



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
Busan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

2022년 생활체육부 주요행사 (계획)

연번	구분	일자	비고
1	2022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사업 설명 및 공모	2022. 1. 24.(월) ~	부분대면 온라인
2	지원 사업공모 신청접수	2. 14.(월) ~ 2. 17.(목)	공문접수
3	제1차 생활체육위원회	2. 22(화)	
4	찾아가는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	2월 중	
5	e-나라도움시스템 전산교육 선정 기관(단체) 담당자	3월 중	부산인재개발원
6	장애인스포츠지도사양성교육 - 사전연수	4. 23.(토) ~ 4. 24(일)	미정
7	제24회 부산장애인생활체육대회	5. 20.(금) ~ 5. 23.(월)	부산시민공원
8	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	종목별 개최	경북 구미
9	2022 장애인 해양 (래프팅대회/요트체험/캠프)	6월 ~ 9월	광안리해수욕장 수영만요트장
10	제11회 부산시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	10. 15.(목) 혹은 10. 16.(금)	사직실내체육관
11	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	10. 19.(수) ~ 10. 24.(월)	울산
12	2022 부산 특수학급 스포츠 패스티벌	10월 ~ 11월	미정
13	e-나라도움시스템 전산교육 선정 기관(단체) 담당자	11월	부산인재개발원

<사업추진 개요>

장애인생활체육지원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 장애인체육회 매칭 사업으로 본회는 구·군지회, 경기단체, 유형별단체, 동호회, 장애인단체 (시설) 등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 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
□ 신청개요

- 신청분야 : 생활체육교실, 동호회, 지역생활체육대회 및 행사
- 신청기간 : 2022. 1. 24.(월) ~ 2. 17.(목)
- 신청방법 : 권역 담당자 이메일 공문 및 운영계획서 제출
- 신청양식 :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/자료실 참조

□ 공모일정(계획)

- 사업계획서 접수 : '22. 2. 14.(월) ~ 2. 17.(목)
-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(생활체육위원회) : '22. 2. 22.(화)~24.(목)
- 교부금 신청(교실 및 동호회) : '22. 2. 24.(목) ~ 3. 4.(금)
- 본회 사업계획서 제출(대한장애인체육회) : '22. 3. 4(금)
-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및 최종선정 : '22. 3월 중
- 교부금 지급 : '22. 3월 중
- 사업단위별 교부금 지급 및 운영 : '22. 3. ~ 11.
- ※ 기존 기관에서 운영 및 지원되는 사업은 신청이 불가함
- ※ 통합정보시스템(대장제), e나라도움시스템(기재부) 등록 가능한 기관 단체만 사업신청

□ 공모사업 문의

- 사업담당
 - 생활체육부 과장 장태준 921-9733 / 부장 임성하 702-9729
 - 찾아가는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팀 팀장 심명보 921-9730
 - 부팀장 배현주 921-9732 / 부팀장 백동호 932-6540 / 부팀장 전치규 932-9960

1. 생활체육교실 지원

- ☐ 사업기간 : 2022. 3. ~ 11.
- ☐ 사업장소 : 지역내 체육시설 및 기관 등
- ☐ 사업형태 : 평가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원
- ☐ 사업대상 : 가맹단체, 유형별 단체, 장애인 관련기관 등
- ☐ 사업내용 : 교실 운영비 지원(지원항목 참조)
 - 교실 지원기준: 1개소 4,000천원 * 최소 지원금액: 1개소 2,000천원
- ☐ 사업구성

구분	사업구성	주요기준 (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)	비고
장애 유형	① 지체장애교실	- 생활체육 전 종목 대상 초보자 교실 시행 - 교실 당 주1회 이상, 6개월 이상 운영 - 교실 참가자는 5인 이상 -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참여 권고 - 이식장애교실 등 다양한 장애유형별 교실 권고 ★ 어르신교실 6개소 이상 (권고)	
	② 지적장애교실		
	③ 청각장애교실		
	④ 시각장애교실		
	⑤ 혼합및기타운영교실		
생애 주기	⑥ 아동교실		
	⑦ 청소년교실		
	⑧ 직장인교실		
	⑨ 여성교실		
	⑩ 어르신교실		
수중 운동	⑪ 수중운동교실	★ 수중운동교실 3개 이상 (권고) * 아쿠아조깅, 수중에어로빅 수중자전거 등	

- ☐ 협조 및 안내사항
 - 전년도 교실신청 기관중 참여자가 동일할 경우 동호회 신청 (단, 참여자가 다를 경우 교실 신청 가능)
 - **등록/집행/정산(e-나라시스템) 가능한 담당자 반드시 지정**
 - 교실선정 후 통합정보센터(<https://total.koreanpc.kr>)에 참여자 반드시 등록바람
 -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되, 최대한 사업이 운영될수 있도록 검토(전면 중단 지양)

□ 지원항목

목	세목	항목	금 액	지원내용	비고
운영비	일반 수용비	지도자 수당	일100,000원 이내	1일 기준 * 수어통역사 별도협의	일과후, 주말 등
			일50,000원 이내	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, 운영기관 소속직원 (종목지도자격입증) 수당 지급 시	
		운영요원 수당	일30,000원 이내	운영기관 소속직원 등 1일 기준	
		운동용품	실 비	공동용품 지원 * 개인용품 지원 불가	
		홍보물	실 비	현수막, 팜플렛, 포스터	
		정산 수수료	실 비	회계법인 위탁정산 비용	
	임차료	시설임차료	실 비	장소 임차비, 입장료, 사용료 등	
		운동용품	실 비	용기구 · 장비 임차비	
	기 타 운영비	의료약품	실 비	소모성 의료약품 구입	
업 무 추진비	사 업 추진비	간식, 음료 등	개소당 20만원 이하	간식(음료 등) *식사금지	

※ 계좌이체 수수료 지원불가(자부담)

※ 기타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여부 결정

2. 동호인클럽(동호회) 지원

- 사업기간 : 2022. 3. ~ 11.
- 사업장소 : 지역 체육시설 및 기관 등
- 사업형태 : 평가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원
- 사업대상 : 가맹단체, 장애인 관련기관 등
- 사업내용 : 동호인 클럽 운영비 지원
 - 지원기준 : 1개소 3,000천원 * 최소 지원금액: 1개소 1,500천원
 - 통합정보센터(<https://total.koreanpc.kr>)에 반드시 참여자 등록 후 명단제출 - 미제출시 접수불가
 - ☞ 클럽 등록 절차 : 클럽생성(운영진) → 클럽승인(시장장애인체육회)
 - 클럽가입(개별) 등록 후 유선확인 요망

□ 동호인클럽 구성 및 운영기준

구분	사업구성	주요기준	비고
동호인 클럽 운영	동호인클럽 운영비지원	- 차등 지원(기존 동호회 운영과 동일) - 순수 생활체육동호인 대상 * 전문선수 등록자가 포함된 동호회 지원 제외 - 공공스포츠클럽 내 동호회 중복 지원 불가 - <u>주 1회이상 / 6개월 이상 운영</u> - <u>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반드시 가입</u> - 동호회 구성인원(15명 이상) * 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	

□ 지원항목 : 운영비(매니저수당, 임차료, 운동용품 등)

목	세목	항목	금 액	지원내용	비고
운영비	일반 수용비	클럽매니저 수당	월150,000원	지원기간 월별 정액지원 * 125,000원 이상 원천징수	
		운영요원 수당	일30,000원 이내	운영기관 소속직원 등 1일 기준	
		운동용품	실 비	공동용품 지원 * 개인용품 지원 불가	
		홍보물	실 비	현수막, 팸플렛, 포스터	
		시상품 제작	실 비	메달, 트로피 등 (시상금으로는 편성 불가) ☆ 지원금의 30% 이내	
		정산 수수료	실 비	회계법인 위탁정산 비용	
	공공요금 및 제세	보험가입	실 비	상해보험 가입 (기금 또는 자부담 의무편성)	
		우편요금 등	실 비	초청장 등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	
	임차료	시설임차료	실 비	장소 임차비 및 입장료, 사용료 등	
		운동용품	실 비	용기구·장비 임차비	
		차량임차	실 비	특장버스 및 응급차량 등	
	기 타 운영비	의료 약품	실 비	소모성 의료약품 구입	
업 무 추진비	사 업 추진비	간식, 음료 등	개소당 20만원이하	간식(음료 등) * 식사금지	

※ 지도자·매니저수당 월별·분할·사업 종료시 일괄지급 하되,
총 금액이 125,000원 이상 원천징수(8.8%)

※ 계좌이체 수수료 지원불가(자부담)

■ 지원 가능/불가능 용품 구분(자산취득비)

[지원 가능 용품]

-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, 공공스포츠클럽 등 생활체육 참여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용품
- 비대면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용품(AR, VR 용품, 영상 촬영장비 등)
- 조달청 내용연수 5년 이상의 비소모성 용품

[지원 불가능 용품: 개인용품 및 소모품]

- 신발, 라켓, 공, 네트, 스틱, 골프채, 도복, 헬스장비, 운동복, 경기용 휠체어의 바퀴 등 개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소모성 제품
- 일반 휠체어, 병원용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이동 보조 장치 등 운동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용품
- 교실 및 동호인 클럽, 공공스포츠클럽 등 생활체육 참여 외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용품

※ 단,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

■ 소모품/비소모품 구분(조달청 물품분류지침)

[소모품]

-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
-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
-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

[비소모품]

-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
-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단위당 취득가액이 일정금액(10만원) 이상인 물품
- * 취득단가 10만원 기준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물품관리규칙에서 규정

※ 비소모품(내구성물품)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, 소모품은 일반수용비로 구입

3. 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

- ☐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- ☐ 사업장소 : 지역 체육시설
- ☐ 사업대상 : 가맹단체, 유형단체
- ☐ 사업내용 : 지역 내 동호인 대회 및 어울림대회(장애인/비장애인) 개최
- ☐ 지원금 : 10,000천원(1개소 ±5,000천원) *교부사업(지원금 별도)

□ 협조 및 안내사항

- 최소 2개 대회 이상 개최
- 지방비 및 자부담 편성 필수
- 사업의 회계검토수수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집행
(※ 예산내 회계검토 수수료 반영 불필요)
- 정부 방역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서 내 코로나19 방역 대책 기재 필수

□ 지원항목 : 운영비(수당, 임차료, 진행물품 등) *교부사업 동일

목	세목	항 목	금 액	비 고
운영비	일반 수용비	심판 수당	120,000원	1일 기준 (해당종목 자격증 소지자)
		기록원 수당	70,000원	1일 기준
		운영요원 수당	70,000원~ 100,000원	1일 기준 * 운영요원 기능에 따른 차등 책정 가능
		수어통역 수당	100,000원	1일 기준 (자격증 또는 관련기관 재직 증빙서류)
		진행물품	실 비	대회진행 관련 사무용품, 비품, 경기운영용품 등
		식 비	7,000원	1식 기준
		숙박비	40,000원	1인 1박 기준 (단, 2일 이상 대회 운영 시)
		대회기념품	10,000원	1인 기준 ☆지원금의 30% 이내
		홍보물제작	실 비	현수막, 팜플렛, 포스터 등
		시상품제작	실 비	메달, 트로피 또는 그에 준하는 시상물품 (상품 및 시상금으로는 편성 불가) ☆지원금의 30% 이내
		기 타	실 비	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,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
	공공요금 및 제세	보험가입	실 비	상해보험 가입 (기금 또는 자부담 의무편성)
		우편요금 등	실 비	초청장 등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
	임차료	시설임차료	실 비	임차비 및 시설사용에 따른 비용
		진행물품	실 비	경기용품 그 외 대회에 필요한 물품
		차량임차	실 비	물품운송차량 및 응급차량 임차
	일반 용역비	대행비용	실 비	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및 영상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☆사전 담당자와 협의 필요
	기타 운영비	의료약품 구입	실 비	소모성 약품 구입 (의료기기 구입 불가)

2

생활체육지원 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□ 생활체육사업(교실)

○ 평가항목

구분	홍보방법	사업특성	지도자 전문성	장소 및 편의시설	자부담 비율	중증 참가자 참여비율	안전준수 사항	위원회 점수	총점
생활체육 교실	5점	20점	10점	10점	10점	25점	10점	10점	100점

○ 배점기준

평가항목	세 부 내 용			비고
홍보방법 (5점)	1. 홍보의 다양성 확보 및 실행 가능 계획 여부			
	5점 지역방송 및 지역매체, 홈페이지, 현수막, 홍보계획 가능성	3점 지역매체 및 홈페이지, 현수막 홍보계획 가능성	2점 홈페이지, 현수막 홍보계획 가능성	
사업특성 (20점)	2. 교실(사업) 특성에 따른 기준			운영횟수, 기간, 장애유형 등
	20점 매우우수	10점 우수	5점 보통	
지도자 전문성 (10점)	3. 지도자 전문성			
	10점 지도자가 해당프로그램 전공자인 경우	5점 지도자가 해당프로그램 유사자격이 있는 경우		
장소 및 편의시설 (10점)	4. 장소 및 편의시설 설치 여부(사진첨부하여 제출) ※ 프로그램 참가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			
	10점 적합	5점 보통		
자부담 비율 (10점)	5. 자부담비율 (자부담/총 예산(자부담+지원금)×100)			
	10점 40% 이상	7점 30%~39%	5점 20%~29%	
중증 참가자 참여비율 (25점)	6. 중증(1급) 및 여성장애인 참여 비율			
	25점 60%이상	20점 59%~50%	15점 49%~40%	
안전준수 사항 (10점)	7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능력 및 제반사항			
	10점 4항목	5점 2~3항목	3점 1항목	
위원회 조정 점수 (10점)	8. 위원 조정점수 부여(10점~1점) ※ 지역별, 종목별, 장애유형별, 소외종목, 특성화 등 고려하여 조정점수부여			

□ 생활체육사업(동호회, 대회 등)

○ 평가항목

구분	참가자수	운영횟수	전년도 운영실적	사업 계획서	자부담 비율	장소 및 편의시설	장애유형 및 특성	안전준수 사항	위원회 점수	총점
동호회 대회	10점	10점	10점	10점	10점	5점	55점	10점	10점	100점

○ 배점기준

평가항목	세 부 내 용	비고										
참가자수 (10점)	1. 동호회/대회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수 <table><tr><td>10점</td><td>8점</td><td>6점</td><td>4점</td><td>2점</td></tr><tr><td>20명 이상</td><td>16명이상 ~ 20회미만</td><td>12명이상 ~ 16회미만</td><td>8명이상 ~ 12회미만</td><td>5명이상 ~ 8회미만</td></tr></table>	10점	8점	6점	4점	2점	20명 이상	16명이상 ~ 20회미만	12명이상 ~ 16회미만	8명이상 ~ 12회미만	5명이상 ~ 8회미만	※ 대회 참가자수는 항목별×5명으로 평가
10점	8점	6점	4점	2점								
20명 이상	16명이상 ~ 20회미만	12명이상 ~ 16회미만	8명이상 ~ 12회미만	5명이상 ~ 8회미만								
운영횟수 (10점)	2. 월별 운영 횟수 <table><tr><td>10점</td><td>8점</td><td>6점</td><td>4점</td><td>2점</td></tr><tr><td>20회 이상</td><td>15회이상 ~ 20회미만</td><td>10회이상 ~ 15회미만</td><td>5회이상 ~ 10회미만</td><td>5회 미만</td></tr></table>	10점	8점	6점	4점	2점	20회 이상	15회이상 ~ 20회미만	10회이상 ~ 15회미만	5회이상 ~ 10회미만	5회 미만	※ 대회 운영횟수는 1회 5점, 2회이상 10점
10점	8점	6점	4점	2점								
20회 이상	15회이상 ~ 20회미만	10회이상 ~ 15회미만	5회이상 ~ 10회미만	5회 미만								
전년도 운영실적 (10점)	3.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<table><tr><td>10점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/tr><tr><td>상</td><td>중</td><td>하</td></tr></table>	10점	5점	3점	상	중	하	※ 전년도 운영현황 및 정산, 결과보고 절차 평가				
10점	5점	3점										
상	중	하										
사업계획서 (10점)	4.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<table><tr><td>10점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/tr><tr><td>상</td><td>중</td><td>하</td></tr></table>	10점	5점	3점	상	중	하	※ 세부운영계획, 홍보 평가				
10점	5점	3점										
상	중	하										
자부담 비율 (10점)	5. 자부담 비율 평가 ※ (자부담/클럽 총 운영예산(지원예산+자부담예산))X100 <table><tr><td>10점</td><td>8점</td><td>6점</td><td>4점</td><td>2점</td></tr><tr><td>40% 이상</td><td>30% 이상 ~ 40%미만</td><td>20% 이상 ~ 30% 만</td><td>10% 이상 ~ 20%미만</td><td>10% 미만</td></tr></table>	10점	8점	6점	4점	2점	40% 이상	30% 이상 ~ 40%미만	20% 이상 ~ 30% 만	10% 이상 ~ 20%미만	10% 미만	
10점	8점	6점	4점	2점								
40% 이상	30% 이상 ~ 40%미만	20% 이상 ~ 30% 만	10% 이상 ~ 20%미만	10% 미만								
장소, 편의시설 (5점)	6. 장소 및 편의시설 설치 여부(사진첨부) ※ 프로그램 참가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 <table><tr><td>5점</td><td>3점</td><td>1점</td></tr><tr><td>적합</td><td>보통</td><td>부적합</td></tr></table>	5점	3점	1점	적합	보통	부적합					
5점	3점	1점										
적합	보통	부적합										
장애유형 (25점)	7. 장애유형에 대한 평가 <table><tr><td>25점</td><td>15점</td><td>10점</td></tr><tr><td>4개 유형</td><td>3개 유형</td><td>2개 유형</td></tr></table>	25점	15점	10점	4개 유형	3개 유형	2개 유형					
25점	15점	10점										
4개 유형	3개 유형	2개 유형										
안전준수 사항 (10점)	8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능력 및 제반사항 <table><tr><td>배점</td><td>10점</td><td>7점</td><td>5점</td></tr><tr><td>구성(일치)</td><td>4항목</td><td>2~3항목</td><td>1항목</td></tr></table> ① 운영요원 응급상황 대비 자격증 취득여부 ② 응급상황 발생 대처 매뉴얼 ③ 수업참여자 건강상태 수업 개시 전 문진표(과거병력 등) 확보 ④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을 위한 용품 배치 여부(1가지이상) 또는 의료기관 연계상황	배점	10점	7점	5점	구성(일치)	4항목	2~3항목	1항목			
배점	10점	7점	5점									
구성(일치)	4항목	2~3항목	1항목									
위원회 조정점수 (10점)	9. 클럽평가 조정점수 부여 ※ 지역별, 종목별, 장애유형별, 소외종목, 특성화 등 고려하여 조정점수부여											

■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- ‘메인 화면’

POPUP ZONE



공지사항 | 보도자료 | 채용/입찰 | 자주하는 질문(FAQ)

2021년 장애인생활체육교실사업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요청	2022.01.06
2021년 장애인생활체육교실사업 지원금(지방비) 집행잔액 및 이자 ...	2022.01.06
2022년도 장애인스포츠클럽작이용권 사업안내	2021.12.29
2021년도 생활체육지원사업(교실 및 동호회) 정산 및 결과보고 양...	2021.12.17
연제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공고	2021.12.17
부산시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전환(무기계약직) 채용 공고	2021.12.07

PHOTO GALLERY



입수용 휠체어 전달
2021.12.21

2021 부산장애인 체육발전 유공자 시상...
2021.12.14



■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- ‘스포츠지원 포털’ 클릭



체육지원서비스 Portal



■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- ‘통합정보센터/생활체육’ 클릭

통합정보센터

생활체육

클럽생성/가입신청

교실참가신청

서버점검 일정 안내

2020년 등록 일정 안내

■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- ‘e나라도움’ 클릭

e나라도움

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

보조금 업무처리 어려웠나요?

친근한 서비스 도움이

보조사업자 업무포털

자주묻는 질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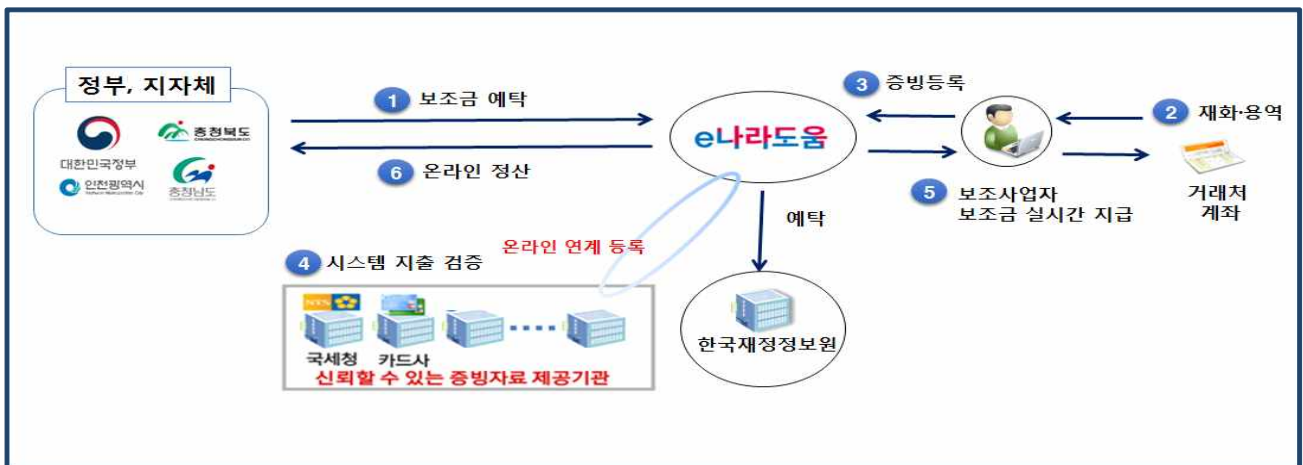
교육교재

동영상교재

1. e-나라도움

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/교부/집행/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, 정보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는 시스템

2. 예산집행 체계도



3. 재교부 기관 이행 절차 요약 ※ 본회 홈페이지(공지사항 - 메뉴얼)

e-나라시스템 재교부 기관 대한 이행 절차 안내

- ① 회원가입, 조직등록 후 연락(본회) 후 통과
- ② 사업등록 후, 연락(본회) 후 통과
- ③ 교부신청, 연락(본회) 후 통과
- ④ 이체 및 정산정보 등록 후 연락 통과
- ⑤ 집행 완료 및 집행 마감 후 연락(본회) 후 통과
- ⑥ 정산보고서 생성 및 작성 후 연락(본회) 후 통과
- ⑦ 이자반납등록 및 이체실행
- ⑧ 완료 끝.